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상주우석노인복지센터

1. **계약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계약의 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의 인증 유효기간 따라 계약 기간을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정한다.

①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을 기본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3. 서비스 내용

구 분	사 업 내 용
방문요양 서비스	가.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 청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배설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등 나. 가사 활동지원서비스: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다. 개인 활동지원서비스: 외출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라. 정서지원서비스: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방문목욕 서비스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
기타	센터는 기타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 할 수 있다.

4. 급여 이용료 및 본인 부담금(2021.01.01. 기준)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1,520,700	1,351,700	1,295,400	1,189,800	1,021,300	573,900

-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분	금액(원)	본인부담	구분	금액(원)	본인부담
30분 이상	14,750	2,213	150분 이상	43,570	6,536
60분 이상	22,640	3,396	180분 이상	48,170	7,226
90분 이상	30,370	4,556	210분 이상	52,400	7,860
120분 이상	38,340	5,751	240분 이상	56,320	8,448

○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분 류	금액(원)	본인부담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75,450	11,318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68,030	10,205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2,480	6,372

○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대상자선정기준(보험료순위)	재가급여
50%초과	15%
25~50%이하	9%
0~25%이하	6%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0%

5. 신원인수인의 권리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6.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① 센터는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 ② 이용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7. 이용절차

- ①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054-532-3100)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 ② 신청, 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급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 ③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로 본인 또는 타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8. 구비서류

- ① 장기요양인정서 1부
- ②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 ③ 복지용구급여확인서 1부

9. 문의사항 상주우석노인복지센터 054-532-3100